

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1월 4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1월 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11년 1월 17일)
상정 원안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행정지원과장 김영국)

□ 제안이유

-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위하여 시 사업소 중 공원사업소를 폐지하고 원미구에 공원관리과를 신설하며,
- 부서기능에 맞는 명칭 변경 및 사무를 신설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목적 규정의 근거법 관련 사항 변경(안 제1조)
- 부서명칭 변경(안 제8조)
 - 문화콘텐츠진흥과 → 문화콘텐츠과
 - 하수과 → 물재생과
- 하천관리에 관한 사무 신설(안 제17조)
- 공원사업소 폐지(안 제17조)
- 원미구 공원관리과 신설(안 제20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공원사업소를 폐지하고 공원관리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?</p>	<p>○ 업무의 신속함 등을 감안할 때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함.</p>
<p>○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?</p>	<p>○ 지난 조직개편때 공원관리에 관한 부분을 놓쳤음.</p>
<p>○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? 조직개편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 할지라도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?</p>	<p>○ 특별히 의견을 들어보지는 않았으나,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음. 앞으로 충분히 보완해 나가겠음.</p>
<p>○ 지속적으로 원미구 조직이 확대되고 있음. 구청간의 조직의 형평성에 대한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함.</p>	<p>○ 우리 시 여건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이나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.</p>
<p>○ 여러 가지 부천이 안고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녹지업무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중·장기적으로 녹지직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?</p>	<p>○ 행정의 전문화, 행정수요 등을 판단하여 증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.</p>
<p>○ 소사, 오정구 환경위생과에 녹지관련 팀을 두는 것은 문제있음. 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도시재생 및 창조를 위해서 환경위생과에 녹지업무를 두는 것이 적합한 지 고민이 필요함?</p>	<p>○ 내부토론과 타 시·군사례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환경위생과에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.</p>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”를 “제110조부터 제120조까지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시립도서관, 공원사업소”를 “시립도서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문화콘텐츠진흥과”를 “문화콘텐츠과”로 한다.

제17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하수행정·하수처리시설 관리·하수관망 정비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

제17조제4호를 삭제한다.

제20조 중 “도시건축과를 둔다.”를 “도시건축과, 공원관리과(원미구에 한한다)를 둔다.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총무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②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총무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③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총무국장”을 “행정지원국장”으로 한다.